

제183회 거창군의회

【임시회】

의원발의 규칙안 상정
(규칙 1건)

거창군의회

【의회운영위원회】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2 ~ 28	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	2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 28호
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2. 05. 17.

발의자 : 강철우·류영수·김재권의원

1. 제안이유

- 현행 의장단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·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출하게 되므로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가 없어
- 의장단 후보자의 등록과 정견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, 등록된 의원은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 (안 제5항)
- 나.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다선(多選),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 (안 제6항)

3. 관련법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

4.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, 또한 등록을 한 의원은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
-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(多選),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 ①. ~ ④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 ①. ~ ④. (현행과 같음)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, 또한 등록을 한 의원은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(多選),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1.10.15] [법률 제10827호, 2011. 7.14, 일부개정]

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<신설 2011.7.14>

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